

장애인 교육법령, 하와이 법률 및 규정¹에 따른
부모와 학생을 위한

절차적 보호 통지

May2022

This document is available electronically at:

<https://www.hawaiipublicschools.org/TeachingAndLearning/SpecializedPrograms/SpecialEducation/Pages/Special-Education-Rights.aspx>

¹ 미국 교육부의 모델 형태에 근거한 절차적 보호 통지

2011 년 8 월 개정

장애인 교육법(IDEA), 연방법률, 하와이 법률 및 규정 (하와이 행정규칙, 타이틀 8, 60 장, 장애인 학생을 위한 무료의 적절한 공공교육의 제공)은 장애인 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가 장애인 학생의 부모, 귀하에게 IDEA 와 미국 교육법의 교육부와 하와이 법률과 규정 (HAR §8-60-59)에 따라 사용가능한 절차적 보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본 통지의 사본은 다음의 귀하에게도 동시에 부여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학년에 한번씩만 부여해야 한다: (1) 초기 추천 또는 평가에 대한 귀하의 요청에 따라; (2) 정기학년 이내에 귀하의 첫번째 주 불만의 접수에 따라 (34 CFR §300.151 부터 300.153 과 HAR §8-60-52 부터 8-60-54 를 통해) 그리고 귀하의 첫번째 적법 불만의 접수에 따라 (34 CFR §300.507 과 HAR §8-60-61 하에); 배치의 변화를 구성하는 귀하 자녀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하라는 결정이 났을때; (4) 귀하의 요청에 따라 [34 CFR §300.504 (a) 그리고 HAR §8-60-59(a)].

이 절차적 보호 통지는 사용가능한 절차적 보호의 완전한 설명을 포함한다, 아래에 따라:

34 CFR §300.148 와 HAR §8-60-27 (사립학교에서 공공비용으로 학생의 일방적인 배치),
34 CFR §§300.151 에서부터 300.153 까지 그리고 §§8-60-52 부터 8-60-54 까지 (주 불만 절차를 통해),

34 CFR §300.300 와 HAR §8-60-31 (부모동의),

34 CFR §§300.502 와 300.503 그리고 HAR §§8-60-44 에서부터 8-60-57 까지(독립 교육 평가) 그리고 HAR §8-60-58 (사전 서면 통지),

34 CFR §§300.505 에서부터 300.518 까지 그리고 HAR §§8-60-60 에서부터 8-60-72 까지 (기타 절차적 보호),

34 CFR §§300.530 에서부터 300.536 까지 그리고 HAR §§8-60-75 에서부터 8-60-81 까지 (징계 절차), 그리고

34 CFR §§300.610 에서부터 300.625 까지 그리고 HAR §8-60-84 (정보의 기밀성)

목차

일반정보.....	4
사전 서면 통지.....	4
모국어-정의.....	5
부모 동의-정의.....	6
부모동의.....	6
독립적 교육 평가.....	9
정보의 기밀성.....	12
정의.....	12
개인 식별 가능.....	12
부모에게 통지.....	13
액세스 권한	13
액세스의 기록.....	14
1명 이상의 학생의 기록.....	14
정보의 종류와 장소의 목록.....	14
수수료.....	15
학부모 요청시 기록 수정.....	15
청문회를 위한 기회	15
청문회 절차	15
청문회의 결과.....	15
개인 식별정보 공개를 위한 동의.....	16
보호	16
정보의 파괴.....	17
주 불만 절차	18
적법 절차 불만 및 청문회와 주 불만 절차간의 차이점.....	18

주 불만 절차의 채택.....	18
최소 주 불만 절차.....	19
주 불만 제소	20
적법 절차 불만 소송절차	22
적법 절차의 불만 제소.....	22
적법 절차 불만.....	23
양식.....	25
중재.....	25
해결 절차.....	27
적법 절차 불만의 청문회.....	30
공정 적법 절차 청문회.....	30
청문회권리.....	31
청문회 결정.....	32
항소.....	34
결정의 최종성; 항소; 공정한 검토.....	34
청문회와 검토의 일정과 편의.....	33
제소할 기간을 포함한 민사소송.....	35
적법 절차의 불만과 청문회가 보류되는 동안 학생의 배치.....	36
변호사 수임료.....	37
장애 학생 징계하는 절차	40
학교 직원의 권위.....	40
징계 제거로 인한 배치 변경.....	44
설정의 결정.....	44
항소.....	44
항소기간 중 배치.....	46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자격미달 학생을 위한 보호46

법률 집행 및 사법 당국에 의한 추천과 조치47

사립 학교에 공공 비용으로 학생의 부모에 의한 일방적 배치에 대한 요구사항49

일반.....49

권리의 양도.....51

일반적인 정보

사전 서면 통지

34 CFR §300.503

HAR §8-60-58

통지

하와이 교육부 (부)는 귀하에게 서면 통지를 (서면으로 특정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 합당한 시간내에 제공해야 한다, 본 통지서가 이하를 하기전에:

1. 귀하의 자녀의 신원, 평가, 또는교육 배치 또는무료의 적절한 공립 교육 (FAPE)을귀하 자녀에게시작하거나 변경을 제안; 또는
2. 귀하의 자녀의 신원, 평가, 또는교육 배치 또는FAPE의 제공을귀하의 자녀에게시작하거나 변경하는것을 거부한다.

통지의 내용

서면 통지는 :

1. 교육부가 제안하거나 취하기를 거부하는 조치를 설명;
2. 교육부가 제안하거나 그 조치를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
3. 교육부가 그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의 결정에 사용한 각 평가의 절차, 평가, 기록, 또는보고서를 설명,
4. 귀하가 특수 교육 (HAR 8-60)에 대한장애인 교육법 (IDEA)과 하와이 법률과 규정의 B부에서의 절차적 보호 조항하에보호 받는다는 진술을 포함하고, 만일 이 통지가 평가를 위한 초기 추천이 아니면, HAR §8-60-59 (절차적 보호 통지)의 사본 방법이 취득할 수 있다.
5. IDEA 의 B부와 HAR 8-60의 규정의 이해를 돕도록 귀하가 연락할 자료를 포함한다,
6. 귀하 자녀의 개인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이 고려한 기타 옵션과 이 옵션들이 거부당한 이유를 설명, 그리고
7. 교육부가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기타 이유의 설명을 제공한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지

그 통지는:

1. 일반 대중에게 이해될 만한 언어로 작성; 그리고
2. 그렇게 하는것이 확실히 비 실용적이지 않는 한, 귀하 모국어 또는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다른 모드에서 제공

귀하 모국어 또는 기타 의사 소통의 모드가 성문어가 아니면, 교육부는 이하를 보장해야한다:

1. 통지는 귀하 모국어 또는 다른 모드의 의사소통으로 귀하에게 구두나 다른 수단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2. 귀하가 그 통지의 내용을 이해한다; 그리고

3. 단락 1 과 2 에 있는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증거기록이 있다.

모국어- 정의

34 CFR §300.29

HAR §8-60-2

영어 숙련도가 제한된 개인과 관련할 때, 모국어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반적으로 본인에 의해 쓰이거나, 학생의 경우에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적으로 그 학생의 부모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
2. 학생과의 모든 직접 접촉 (학생의 평가를 포함), 언어는 일반적으로 학생 가정이나 학습 환경에서 사용된다.

난청, 실명, 또는 성문언어가 없는 사람의 의사소통 모드는 그 사람이 보통 사용하는것이다 (예: 수화,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등).

부모의 동의 - 정의

34 CFR §300.9

HAR §8-60-2

동의를 이하를 의미한다:

1. 귀하의 모국어나 다른 모드의 의사 소통 방식의 통신 (수화, 점자, 또는 구두 통신) 으로 귀하가 동의를 하는 조치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
2. 귀하가 조치를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하며, 동의는 조치와 기록의 목록 (있는 경우)이 누구에게 공개 될거라는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3. 귀하는 동의가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것을 이해한다.

만일 귀하의 자녀가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이후에 동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해야한다. 동의의 철회의 경우 동의를 한 때부터 철회 이전에 발생한 조치는 부정 (취소)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귀하의 동의의 철회 이후에 학교는 귀하의 자녀가 받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은 어떠한 교육 기록이든지 개정 (변경) 할 필요가 없다.

부모의 동의

34 CFR §300.300

HAR §8-60-31

초기 평가에 대한 동의

교육부는 사전 서면 통지와 부모 동의의 제목아래에 설명된 조치의 사전 서면 통지 (PWN)를 귀하에게 먼저 제공하고 귀하의 동의 (사정이 평가의 일부로서 요청될 때) 없이는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 IDEA 의 B 부에 따라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귀하 자녀의 초기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귀하의 자녀가 장애 학생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초기 평가를 위해 의식적인 동의를 얻기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초기 평가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학교가 귀하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동의는 아니다.

교육부는 관련된 초기 평가를 근거로 서비스나 활동에 대한 동의의 거부를 귀하나 귀하 자녀에게 임의의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부정하는데, IDEA 기타 B 부 의 요구사항으로 교육부에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귀하의 자녀가 공립학교에 등록했거나 귀하가 공립학교에 자녀를 등록하려고 모색하면서 초기 평가의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제공하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교육부는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IDEA 중재나 적법 절차 불만, 해결회의, 공정 적법 절차 청문회 과정을 사용해 귀하 자녀의 초기 평가 수행을 모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의 평가를 추구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찾아 식별하고 평가하는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

피보호자 초기 평가에 대한 특수 규정

IDEA 와 HAR 8-60에 사용된 바와 같이, 주의 피보호자는 학생이 사는 장소의 주에 의해 결정되며 다음과 같음을 의미한다:

1. 수양 자녀;
2. 주 법률에 따라 주의 피보자로 간주; 또는
3. 공공 아동 복지기관의 감독하에 있다.

귀하가 알아야 할 한가지 예외가 있다. 주의 피보호자는 IDEA 와 HAR 8-60 에 사용되는 부모의 정의에 부합하는 수양 부모가 있는 입양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학생이 주 피보호자이며 그/그녀의 부모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교육부는 만일 그 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초기 평가에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의 경우로서 만일: :

1. 합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생의 부모를 찾을 수 없다;
2. 하와이 법률에 따라 부모의 권리가 종결되었다; 또는
3. 판사가 부모가 아닌 개인에게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리를 지정했다. 이 해당이는 초기의 평가를 위한 동의를 제공하였다.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동의

교육부는 귀하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처음으로 이전에 귀하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는 귀하의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이전에 귀하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을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귀하가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기 전에 귀하의 의식적인 동의를 제공할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후에 이러한 동의를 거부하거나 귀하의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 (취소) 한다면, 교육부는 귀하 자녀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귀하 자녀의 개인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의 권유에 의해)가 귀하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도 있다는 동의나 판결을 얻기 위해 절차적 보호 (즉, 중재, 적법절차 불만, 해결회의, 또는 공정 적법 절차 청문회)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귀하가 자녀에게 처음으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는 것을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귀하가 그 같은 동의를 제공하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후에 귀하의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 (취소) 한다면, 교육부는, 귀하의 동의를 추구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귀하의 자녀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 그러한 서비스를 귀하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의 불이행이 귀하 자녀에게 FAPE가 유효하게 하는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2. 귀하의 동의가 요청되었던 특수교육 및 서비스를 위해 귀하 자녀의 IEP회의를 가지거나 IEP를 계발하는 것은 요청되지 않는다.

귀하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처음으로 받은 이후 귀하의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 (취소) 한다면, 교육부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서비스를 중단하기 이전에 귀하에게 사전 서면 통지의 제목 아래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전 서면 통지 (PWN)를 제공해야 한다.

재평가에 대한 부모의 동의

교육부는 귀하 자녀를 재평가 하기 이전에 귀하의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부가 이하를 나타낼 수 있지 않는 한:

1. 귀하 자녀의 재평가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합당한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2. 귀하가 응답하지 않았다.

귀하가 자녀의 재평가에 동의를 거부한다면, 교육부는 요청이 되지는 않지만 귀하 자녀의 재평가에 동의 거부 무효화를 모색하기 위해 중재, 적법 절차 불만, 해결회의, 또는 공정 적법절차 청문회를 모색할 수 있다. 초기의 평가에서와 같이 교육부는 그런 방식으로 재평가를 모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IDEA 의 B 부 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한 합당한 노력의 서류

귀하 학교는 초기 평가를 위해, 처음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평가를 위해, 그리고 초기 평가의 주 피 보호자 부모를 찾기 위해 귀하의 동의를 얻도록 합당한 노력으로 서류를 관리해야만 한다. 서류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교육부의 시도의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1. 전화통화나 시도된 전화와 그 전화통화 결과의 자세한 기록
2. 귀하에게 전송된 것의 사본과 임의로 받은 반응; **그리고**
3. 귀하의 집 방문이나 직장 방문의 자세한 기록과 그 방문의 결과.

기타 동의요건

귀하의 동의는 교육부가 아래사항을 하기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다:

1. 귀하 자녀의 평가나 재평가의 일부로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한다; **또는**
2. 시험이나 평가이전 동의가 모든 학생들 부모에게 요구되지 않는 이상 귀하 자녀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나 다른 평가를 준다.

귀하가 본인의 비용으로 귀하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켰거나 가정 교육을 시키고 귀하 자녀의 초기 평가나 재평가를 위한 동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를 제공할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교육부는 분쟁 해결절차 (예: 중재, 적법절차 불만, 해결회의, 또는 공정 절차 청문회) 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귀하 자녀가 동등한 서비스(부모가 배치한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장애인 학생에게 유효한 서비스).

를 받는데 합법적이라고 고려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독립적 교육 평가

34 CFR §300.502

HAR §8-60-57

일반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귀하가 교육부에 의해 취득된 귀하 자녀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립적 교육 평가(IEE)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귀하가 IEE 를 요청할 경우, 교육부는 귀하가 IEE 를 취득할 수 있는 장소와 IEE 에 적용하는 교육부 기준에 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의

독립적 교육 평가는 교육부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자격 갖춘 시험관에 의해 실시된 평가를 의미한다.

공공 비용은 교육부가 평가의 전체 비용을 지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B 부, 각 주가, 유효한 각종 주, 지방과 연방, 그리고 지원의 사적 원천이 주에서 법령의 B 부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제공하도록 하는 IDEA B 부 의 규정과 일치하여, 그 평가가 귀하에게 무료로 제공됨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비용으로 평가할 권리

귀하가 교육부에 의해 취득된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 자녀의 IEE 를 공공비용으로 할 권리가 있다.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귀하가 자녀의 IEE 를 공공비용으로 요청한다면, 교육부는 불필요한 지연없이, (a) 귀하 자녀의 평가가 적절하다는 것을 보일 청문회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 불만 사항을 접수; 또는, (b) 교육부는 청문회에서 귀하가 취득한 귀하 자녀의 평가가 교육부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이상, 공공비용으로 IEE 를 제공해야만 한다.
2. 교육부가 청문회를 요청하고 마지막 결정이 귀하 자녀의 평가에 대한 교육부의 평가가 적절한 것인 경우, 귀하는 공공비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IEE 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귀하가 자녀의 IEE 를 요청할 경우, 교육부는 취득된 귀하 자녀의 평가에 반대하는이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귀하자녀의 교육부 평가를 방어하기 위하여 귀하 자녀에게 공공비용으로 IEE 를 제공하는것이나, 귀하 자녀의 교육부 평가를 방어하기 위해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비 합리적으로 지연하지 않아야 한다.

귀하는 교육부가 귀하가 반대하는 귀하 자녀의 평가를 매년 실시할때 귀하 자녀의 IEE 를 공공비용으로 할 단 한번의 자격이 있다.

부모가 시작한 평가

귀하 자녀의 IEE 를 공공비용으로 취득하거나 귀하가 사비로 취득한 귀하 자녀의 평가를 교육부와 공유한다면:

1. 교육부는 귀하 자녀의 평가의 결과가, 귀하자녀의 FAPE 규정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어떤 결정이든지 교육부의 IEE 기준을 충족한 것인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그리고**
2. 귀하 또는 교육부는 귀하 자녀와 관한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증거로써 평가를 제시할 수 있다.

청문회 임원에 의한 평가 요청

청문회 임원이 적법 절차 청문회의 일환으로 귀하자녀의 IEE 를 요청할 경우, 평가 비용은 공공 비용으로 부담 한다.

교육부 기준

IEE 를 공공 비용으로 할 경우, 평가 장소와 심사관의 자격을 포함한 평가가 취득된 것에 따른 기준은 교육부가 평가 (그 기준은 IEE 의 귀하의 권리와 동일한 정도)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준이어야만 한다.

위에 설명된 기준을 제외하고는, 교육부는 공공 비용의 IEE 취득에 관한 조건이나 일정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보의 기밀성

HAR §8-60-84

18 세 이상의 학생이나 부모는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 보호 법령 (FERPA)과 학생과 부모의 교육권 및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하와이주 규정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록과 관련된 자격이 주어진다. FERPA 와 하와이 규칙에 따라, 학생이 18 세가 되면, 기록을 공개하는데 동의하는 권리를 포함한 학생의 교육 기록에 관한 부모의 권리가 학생에게로 전이된다.

정의

34 CFR §300.611

정보의 기밀성 제목 아래에 사용된것과 같은:

- *파괴*가 의미하는것은 정보에서 개인의 식별자를 물리적인 파괴나 제거로서 그 정보가 더이상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없게 되는것을 말한다.
- *교육 기록*은 CFR 34 99 파트(1974 년 20 U.S.C. 1232g 의 RERPA 를 적용하는 법령) 에 "교육 기록"의 정의에서 다루어진 유형의 기록을 의미한다.
- *참여 기관*은 IDEA 의 B 부에 따라,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 관리, 또는 사용하거나 정보의 원천이 되는 임의의 학군이나, 기관,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개인적 식별 가능

34 CFR §300.32

*개인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음을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1. 귀하 자녀의 이름, 부모로서의 귀하의 이름, 또는 기타 가족일원의 이름;
2. 귀하 자녀의 주소;
3. 귀하 자녀의 사회 보장번호 또는 학생 식별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자; **또는**
4. 합당한 확실성으로 귀하 자녀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인 특성이나 기타 정보의 목록.

부모에게 통지

34 CFR §300.612

교육부는 개인적 식별 정보의 기밀성에 관하여 부모에게 완전히 알리는데 적합한 통지를 주어야 한다, 포함사항은:

1. 통지의 설명이주 에서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제공된 것.
2. 개인적 식별 정보가 관리된 학생에 대한 설명, 추구된 정보유형, 정보(정보가 수집된 원천을 포함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도록 주가 의도하는 방법, 그리고 정보의 사용;
3. 참여기관이 개인 식별정보의 저장, 제 3 부서로의 공개, 보존과 파괴와 관련해 준수해야 하는 정책과 절차의 요약; 그리고
4. FERPA에 따른 권리와 CFR 34 99 부분의 적용을 포함한 이 정보와 관련된 부모와 학생의 모든 권리의 설명

특수교육및 관련 서비스 ("아동 물색"으로도 알려짐) 의 필요에서 식별하고, 장소를 찾고, 또는 학생을 평가하는 주요 활동 이전에, 통지는 신문이나 다른 미디어로 또는 두가지 모두로 적절한 배포로 활동의 주 전영역을 통하여 부모에게 알리도록 출간되거나 발표되어야 한다.

액세스 권한

34 CFR §300.613

IDEA 의 B 부에 따라 참여기관은 교육기관이 수집, 관리, 또는 B 부사용한 귀하 자녀에 관련된 임의의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참여 기관은 교육권의 보호와 부모와 학생의 개인 정보 보호권에 관한 하와이 행정 규칙 (HAR)에 따라 명시되지 않는 한 IEP 관련 회의 이전에, 또는 임의의 공정 적법 절차 청문회 (해결회의나 징계에 관한 청문회 포함)이전에 불필요한 지연없이 귀하가 요청을 한 45 역일이내에 귀하 자녀에 관한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는것을 허락해야 한다.

교육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귀하의 권리는 이하를 포함한다:

1. 기록의 설명과 해석을 위해 참여 기관이 귀하의 합리적 요청에 반응할 것에 대한 귀하의 권리;
2. 귀하가 그 사본을 수령하지 않은 한, 귀하가 기록을 효과적으로 열람하고 검토할 수 없다면 참여기관이 기록사본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귀하의 권리; 그리고

3.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토할 대변인을 취할 귀하의 권리

참여기관은 귀하가 후견인의 임무, 별거, 이혼과 같은 문제를 관할하는 해당 주 법령에 따라 권한이 없다고 권고받지 않는 한 귀하 자녀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할 권위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액세스의 기록**34 CFR §300.614**

각 참여 기관은 IDEA 의 B 부 (참여기관의 권위가 있는 직원이나 부모의 사용은 제외)에 따라 부서의 이름, 사용한 날짜, 그리고 부서가 기록을 사용할 권위가 있다는 목적을 포함하여,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에 대한 액세스를 하는 부서들의 기록을 보관해야만 한다.

1 명이상의 학생의 기록**34 CFR §300.615**

임의의 교육기록이 1 명 이상의 학생의 기록을 포함하는 경우, 그 학생들의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 관한 정보만을 열람하거나 검토나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보의 유형과 장소의 목록**34 CFR §300.616**

요청에 따라, 각 참여 기관은 참여기관에 의해 교육기록이 수집되고, 관리되고, 또는 사용된 교육 기록의 유형과 장소의 목록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수료**34 CFR §300.617**

각 참여 기관은 수수료가 기록을 열람하고 검토하는 귀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않는 경우, IDEA 의 B 부에 따라 귀하를 위해 만들어진 기록의 사본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교육권 및 학생과 부모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된 HAR 장에 따라, 청구는 실제 복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정난의 경우, 참여기관은 복제 비용을 포기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IDEA의 B부에 따라 정보를 검색하거나 회수하는데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학부모 요청시 기록 수정

34 CFR §300.618

귀하가 IDEA의 B부에 따라 교육기록이 수집, 관리, 또는 사용된 교육기록에서 귀하 자녀와 관련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귀하 자녀의 개인 정보 보호나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확신하면, 귀하는 참여기관이 정보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귀하의 요청이 접수된 합당한 시간내에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기관이 귀하의 요청에 따라 정보 변경 거절하는 경우, **청문회를 위한 기회** 제목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귀하에게 거부를 통지하고 귀하의 청문회 권리를 권유해야 한다.

청문회를 위한 기회

34 CFR §300.619

참여기관은, 요청에 따라,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거나, 귀하 자녀의 개인 정보 보호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귀하 자녀와 관련된 교육기록의 정보에 도전하는 청문회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청문회 절차

34 CFR §300.621

교육 기록의 정보에 도전하는 청문회는 학생과 부모의 교육권의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HAR 장과 FERPA에 따라 그같은 청문회를 위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청문회의 결과

34 CFR §300.620

청문회의 결과로, 참여기관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기타 귀하 자녀의 개인 정보 보호나 기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참여기관은 정보를 그에 따라 바꾸고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일 그 청문회의 결과로써, 참여기관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그밖에 정보에서 귀하 자녀의 개인 정보 보호이나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정하면, 참여기관은 귀하에게 기 정보에 언급되는것이나 참여 기관의 결정에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임의의 이유를 제공하는 귀하 자녀에 관한 진술 보관을기록에 배치할 귀하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귀하 자녀의 기록에 배치된 그같은 설명은 :

1. 기록이나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참여기관이 관리하는 기한내에서는 참여 기관이 귀하 자녀의 기록의 일부로 지속해야 한다; 그리고
2. 참여기관이 귀하자녀의 기록이나 도전 정보를 임의의 부서에 공개하면, 그 설명도 그 부서에게 공개되어져야 한다.

개인식별정보 공개를 위한 동의

34 CFR §300.622

정보가 교육기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공개가 FERPA 에 따라 부모의 동의없이 허락되지 않은 한, 귀하의 동의는 개인 식별 정보가 참여기관의 관계자가 아닌 다른 부서로 공개되기 이전에 취득되어야 한다. 아래에 특정화된 상황에서는 제외하고는, IDEA 의 B 부의 요구사항 충족의 목적으로 개인식별정보가 참여기관의 임원에게 공개되기 이전에는 귀하의 동의는 요청되지 않는다.

귀하의 동의, 또는 주 법령하에 성년의 나이에 도달한 합법적인 학생의 동의는 개인 식별 정보가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지불하는기관의 임원에게 공개되기 이전에취득되어야 한다.

보호

34 CFR §300.623

각 참여 기관은 수집, 저장, 공개, 그리고 파괴의 단계에서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한다. 각 참여 기관에서의 한 관계자는 임의의 개인 식별 정보의 기밀성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개인 식별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DEA의 B부와 FERPA에 따라 기밀성과 관련하여 주 정책과 절차에 관련된 훈련이나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각 참여 기관은 개인식별정보에 액세스가 있을 수 있는 기관내의 고용인들의 이름과 직책의 현행의 목록을 공공 검사를 위해 관리해야 한다.

정보의 파괴

34 CFR §300.624

교육부는 IDEA의 B부에 의해 개인 식별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거나 사용된 것이 귀하의 자녀에게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을때는 귀하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보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파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귀하 자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그녀의 성적, 출석기록, 참가한 수업, 완료학년 수준, 그리고 끝마친 해의 영구적인 기록은 시간 제한없이 유지될 수 있다

귀하의 요청에 따라, 교육부는 또한 기록의 파괴이전에 교육기록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해야 한다.

주 불만 절차

적법 절차 불만 및 청문회와 주 불만 절차간의 차이점

34 CFR §§300.151 through 300.153 and 300.507 through 300.518

HAR §8-60-52 에서부터 8-60-54 까지 와 8-60-61 부터 8-60-72 까지

IDEA 의 B 부의 규정은 주 불만 및 적법절차 불만과 청문회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정한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임의의 개인이나 조직은 교육부에 의한 임의의 B 부의 위반을 주장하는 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귀하 또는 교육부만이 장애 학생의 학생의 FAPE 의 조항이나 신분증명, 평가, 또는 교육 배치를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제안이나 거부에 관한 문제의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청문회 임원은 귀하의 요청이나 교육부의 요청으로 일정에 특정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 한, 교육부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60 달력일 이내에 주 불만을 해결해야 하고 정당한 청문회 임원은 적법절차 불만을 경청해야하고 (만일 해결회이나 중재를 통해 결의되지 않으면) 해결절차의 제목하에, 이 문서안에 설명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해결기간의 종료 이후 45 역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발행해야 한다. 청문회 임원은 학생의 교육이 용인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부모나 교육부로부터의 그 연장의 필요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 및 요청, 연장의 요청을 거절하는 부정적인 영향, 적법 절차 불만에 급속한 형태의 주의를 보장하는 IDEA 와 HAR 8-60 의 의도와 그 연장이 개입된 어느 한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IDEA 와 HAR 8-60 의 의도를 무효화할 것인지를 여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주 불만 및 적법 절차 불만, 해결과 청문회 절차는 아래에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양식서는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돕고 귀하나 다른 당사자가 양식서의 제목하에 설명된 주 불만을 제기하는데 도움이 된다.

주 불만절차의 채택

34 CFR §300.151

HAR §8-60-52

일반

교육부는 다음을 위한 서면 절차를 작성해야 한다:

1. 다른 주의 조직이나 개인이 제기한 불만을 포함한 임의의 불만을 해결;
2.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 그리고

3. 부모 교육 및 정보 센터, 보호 및 옹호 기관, 독립 생활 센터 및 기타 적절한 기관을 포함한 부모와 기타 관심 있는 개인에게 주 불만 절차를 광범위하게 배포하는 것.

적절한 서비스의 거부에 대한 구제

교육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주 불만을 해결하는데, 교육부는 다음 사항에 대처해야 한다:

1. 학생이 필요한 것(보상의 서비스나 금전적인 상환)에 대처하는 교정적인 행위를 포함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실패; 그리고
2. 모든 장애 학생을 위한 서비스의 적절한 향후 조항.

최소 주 불만 절차

34 CFR §300.152

HAR §8-60-53

시간 제한; 최소 절차

교육부는 불만자가 이하와 같이 제소한 이후 달력 60일의 제한 시간을 주 불만 절차에 포함해야 한다:

1. 교육부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독립적 현장수사를 수행한다;
2. 불만자에게 구두로나 서면으로, 이의에서의 고소에 관해 추가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3. 최소한, 교육부에 불만에 대응할 기회를 다음을 포함하여 제공한다: (a) 교육부의 선택으로, 불만을 해결하는 제안; 그리고 (b) 불만을 제소한 부모와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중재에 가담하는 것에 동의할 기회;
4.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교육부가 IDEA의 B부의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5. 불만 사항에서와 이하를 포함하는, 불만 사항에서 각 고소에 대처하여 고소인에 서면 결정을 발행한다: (a) 사실과 결론의 결과; 그리고 (b) 교육부의 마지막 결정에 대한 이유.

시간 연장; 마지막 결정; 이행

위에 설명된 교육부의 절차는 반드시:

1. 단지 이하와 같은 경우 60 달력일의 연장을 허가: (a) 특정한 주불만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또는 (b)** 귀하와 교육부가 분쟁 해결의 대안적인 수단이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간을 연장할 것을 동의한다.
2. 다음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부의 최종 결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a) 설명적 지원 활동; (b) 협상; (c)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교정 조치.

주 불만과 적법 절차 청문회

서면의 주 불만이 또한 **적법 절차 불만의 제소** 제목 하에 설명된 것으로서 적법 절차 청문회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주 불만이그같은 청문회 부분의 하나 이상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주는 청문회가 끝날때까지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대처되고 있는 주 불만의 임의의 부분들을 분리해 두어야 한다. 적법 절차 청문회의 일부가 아닌 주 불만에서의 임의의 문제는 위에 설명된 시간 제한과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주 불만에 제기된 문제는 같은 당사자에 관련되어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이전에 결정된적이 있다면 (예를 들어 귀하와 교육부), 적법 절차 청문회 결정은 그 문제에 구속력을 지니고 교육부는 불만자에게 그 결정이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만 한다.

적법절차 청문회 결정을 이행하는데 실패하는 학교를 고소하는 불만은 교육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주 불만 제소

34 CFR §300.153

§8-60-54

조직이나 개인은 이전에 설명한 절차에 따라 서명 날인된 서면의 주 불만을 제소할 수 있다.

서면의 불만을 보내는 주소: Department's Complaints Management Program

E-mail address:
specialedcomplaints@k12.hi.us

Mailing Address:
Complaints Management Program
Monitoring and Compliance Branch
Office of the Deputy Superintendent
P.O. Box 2360
Honolulu, HI 96804

주 불만은 이하를 포함해야 한다:

1. 교육부가 IDEA 의 B 부의 요건사항이나 34 CFR 부분 300 이나 HAR 8-60 의 이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술;
2. 진술이 기반이 되는 사실;
3. 서명과 불만을 제소하는 당사자의 연락 정보; 그리고
4. 특정 학생과 관련된 위반을 제소하는 경우:
 - (a) 학생의 이름과 학생의 거주지;
 - (b)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 (c) 노숙자 학생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생을 위해 사용할 연락처 정보 및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이름;
 - (d) 문제에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학생의 문제의 본질의 설명; 그리고
 - (e) 불만이 제소되었을 당시에 불만을 제소하는 담당자에 어느정도 알려지고 사용가능한 문제에 대해 제안된 해결

불만은 **주 불만 절차의 채택** 제목에 따라 불만이 수령된 날짜 이전의 1 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제소해야 한다.

주 불만을 제소하는 담당자는 교육부로 그 담당자가 불만을 제소하는 동시에 학생을 서비스하는 복합지역 교육감에게 불만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DOE%20Forms/Special%20Education/WrittenComplaint.pdf>

적법 절차 불만 소송 절차

적법 절차 불만의 제소

34 CFR §300.507

HAR §8-60-61

일반

귀하나 교육부는 귀하 자녀의 신분증명, 평가, 또는 교육적 배치를 시작하거나 바꾸는 것의 제안이나 거부하는 것에 또는 귀하자녀의 FAPE의 조항과 관련된 임의의 문제에 따라 적법조치 불만을 제소할 수 있다.

적법 조치 불만은 적법조치 불만의 기반이 되는 혐의 행동에 관해 귀하나 교육부가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만 했던 2년 이전의 기간내에 일어난 위반을 기소해야만 한다.

귀하가 공립학교에서 무료적절교육의 사용가능성에 동의하지 않고, 귀하의 자녀를 사립학교나 시설에 배치하고, 그 배치의 비용에 대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재정적 책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상환에 대한 적법 절차 청문회는 사립학교 또는 시설의 등록 180일 이내에 요청해야 한다. 180일 등록 일정은 사립학교의 일방적인 게재 배치에 대한 상환요구의 제한 법령의 부제목에 설명된바와 같이 학생의 출석 첫날에 시작한다.

이상의 일정은 일정 이내에 적법 절차 불만을 제소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1. 교육부가 불만에서 식별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특정하게 잘못 대변하였다; 또는
2. 교육부가 IDEA의 B부 에 따라 제공되도록 요청된 정보를 귀하에게서 억제하고 있었다.

부모를 위한 정보

귀하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또는 교육부나 귀하가 적법 절차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교육부는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임의의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법률이나 기타 관련 서비스를 귀하에게 통지해야 한다.

적법절차 불만**34 CFR §300.508**

HAR §8-60-62

일반

청문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귀하나 교육부 (또는 귀하의 변호사나 교육부의 변호사)는 상대자에 적법조치 불만을 제출해야 한다. 즉 불만은 아래에 나열된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기밀로 지켜져야 한다.

교육부는 청문회의 실시와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청문회의 요청은 학생이 등록된 시설체의 적합한 시설체 지역 교육감에 의해 행해진다.

불만의 내용

적법절차 불만은 다음을 포함해야한다:

1. 학생의 이름;
2. 학생의 거주지 주소;
3. 학생의 학교 이름;
4. 학생이 노숙자 학생이나 청소년인 경우, 학생의 연락처 정보와 학생 학교의 이름;
5. 문제에 관련된 사실을 포함하여, 제안되거나 거부된 조치와 관련한 학생에 대한 문제의 본질의 설명; 그리고
6. 당시에 불만을 제소하는 당사자(귀하나 교육부)에 알려지고 사용가능한 정도의 문제에 대해 제안된 해결.

적법 절차 불만 청문회 이전에 요구되는 공지 사항

귀하나 교육부는 (또는 귀하의 변호사나 교육부의 변호사) 이상에 나열된 정보를 포함하는 적법조치 불만을 제소하기 이전에는 적법 절차 청문회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불만의 충분함

적법 절차 불만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은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적법 절차 불만은, 적법 절차 불만을 수령하는 당사자(귀하나 교육부)가 청문회 임원과 다른 당사자에게 수령한 당사자가 적법 절차 불만이 위에 나열된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불만을 수령한 15 력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한 충분하다고 (이상의 내용 요건사항을 만족시켰다) 간주된다.

적법 절차의 불만은 위에 나열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수령하는 담당자(귀하나 교육부)가 적법 절차 불만이 불충분하다는 통지를 받은 5 일 이내에, 청문회 임원은 적법절차 불만이 위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귀하와 교육부에 즉각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불만 개정

귀하나 교육부는 단지 이하의 경우에만 불만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대 당사자가 변경을 서면으로 인정하고 **해결 조치** 제목아래에 설명된 해결 회의를 통해 적법 절차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또는**
2. 적법 절차 청문회가 시각하기 전 늦어도 5일 이전에, 청문회 임원이 변경에 허가를 부여한다.

불평하는 당사자(귀하나 교육부)가 적법절차불만을 변경하면, 해결회의의 일정(불만 수령의 15 달력일 이내)과 해결을 위한 기간 (불만 수령의 30 달력일 이내)은 개정된 불만이 제소된 날짜에 다시 시작한다.

적법 절차 불만에 대한 교육부 반응

교육부가 **사전 서면 통지**의 제목 아래에 설명된바와 같이, 귀하의 적법절차불만에 포함된 주제문제에 관한 PWN을 보내지 않았다면, 교육부는 적법 절차 불만 수령의 10달력일 이내에 귀하에게 이하를 포함하는 답변을 보내야 한다:

1. 적법절차불만에서 제기된 행위를 취하는 것을 교육부가 제안하거나 거절했는지 이유에 대한 설명;
2. 귀하 자녀의 IEP 팀이 고려했던 다른 선택사항들과 그것들이 거절되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
3. 각 제안되었거나 거절된 행위에 대한 토대로서평가 절차, 시험, 기록, 또는 교육부가 사용한기록; **그리고**
4. 교육부가 제안했거나 거절한 행위와 상응하는 다른 요소들의 설명.

위의 항목 1번에서 4번까지의 정보를 제공하는것은 적법 절차 불만이 불충분하다고 교육부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

적법 절차 불만의 다른 부서의 반응

바로 위에 소제목 **적법 절차 불만에 교육부 반응**,하에 진술된 것을 제외하고는,적법절차불만을 수령하는 담당자는, 불만을 수령하는 역일 10 이내에, 불만상에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반응을 상대 당사자에 보내야 한다.

양식

34 CFR §300.509

HAR §8-60-63

교육부는 적법절차불만을 귀하가 제소하는것을 돕고 귀하와 기타 당사자가 주 불만에 제소하는것을 돕는 모델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모델 양식의 사용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적법절차불만이나 주 불만을 제소하기 위해 양식이 요청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한 귀하는 그 모델 양식이나 다른 적합한 양식을사용할 수 있다.

<http://www.hawaiipublicschools.org/DOE%20Forms/Special%20Education/RequestforDueProcessHearing.pdf>

중재

34 CFR §300.506

HAR §8-60-60

일반

교육부는 귀하와 교육부가 적법절차불만의 제소의 이전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포함하여, IDEA 의 B 부에 따른 임의의 문제와 관련된 의견차이를 해결하는것을 허용하도록, 중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재는 귀하가 **적법 절차 불만 제소**의 제목아래에 설명된것과 같이 귀하가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하기 위하여 적법절차불만을 제소한 여부에 상관 없이, IDEA 의 B 부에 설명된것과 같이 분쟁을 해결하는것에 가능하다.

요구사항

절차는 다음과 같은 중재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1. 귀하 부분과 교육부 부분에 자발적 형태의 책임이다;
2.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귀하의 권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거나, 또는 IDEA의 B부 에 제공된 기타의 권리를 거부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3. 효과적인 중재 설명으로 훈련받은 자격이 갖춰지고 공정한 중재인에 의해 실시되었다.

교육부는 자격이 갖춰지고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의 조항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알고있는 중재인들의 명단을 소지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무작위적, 회전적이거나, 또는 다른 공정한 근거로 중재인을 선별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회의의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의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중재 과정의 각 회의는 제 시간에 계획되어야 하고 귀하와 교육부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귀하와 교육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양쪽 부서는 해결에 착수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재 절차 동안에 일어난 모든 토론은 기밀로 관리되고 임의로 계속되는 적법 절차 청문회 또는 민사 절차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한다; 그리고
2. 교육부에 속하는 권위를 가진 교육부의 대변인과 귀하에 의해 서명되었다.

서면의 서명된 중재동의를 관할구역의 주 법원 (이러한 사례를 듣는 주 법령하의 권한을 지니는 법원) 혹은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다.

중재과정 도중에 일어난 토론은 기밀화 되어야 한다. 그것은 IDEA 2004 B부에 따라향후의 적법절차의 청문회 또는 B부지원을 받는 연방 법원 또는 주 법원의 민사절차에 사용될 수 없다 (당사자들은 중재가 시작되기 이전에 기밀 유지 서약에 서명하는 것이 더 이상 요구되지는 않는다).

중재인의 공정성

중재인:

1. 귀하자녀의 교육이나 치료에 관련된 교육부의 직원일 수 없다; 그리고
2. 중재인의 객관성과 충돌하는 개인적이거나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나 그녀가 단지 교육부에 의해 중재인으로 종사하는 지불을 받기 때문에 교육부의 직원이 아닌 것이며 중재자의 자격을 갖는다.

해결 절차

34 CFR §300.510

HAR §8-60-64

해결 회의

귀하의 적법 절차 불만의 통지의 수령 후 15 달력일 이내에, 그리고 적법조치 청문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교육부는 귀하의 적법 절차 불만에서 식별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지닌 IEP 팀의 일원들이나 관련일원과 귀하와 함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 회의는:

1. 교육부 대신 의사결정 권위를 가진 교육부의 대변인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2. 귀하가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 한 교육부의 변호사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귀하와 교육부는 회의에 참석할 IEP 팀에 해당 구성원을 결정한다.

회의의 목적은 귀하가 귀하의 적법 절차 불만과 불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실에 대해 토의하여 교육부가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가지는 데 있다.

다음의 경우 해결 회의는 필요하지 않다, 만약:

1. 귀하와 교육부가 그 회의를 포기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다; 또는
2. 귀하와 교육부는 **중재** 제목하에 설명된 것과 같이, 중재 과정을 사용할 것에 동의한다.

해결 기간

교육부가 적법 절차 불만 (해결절차를 위한 기간 동안) 수령의 30달력일 이내에 귀하가 만족하게 적법 조치 불만을 해결하지 않았다면, 적법 절차 청문회가 발생할 수 있다.

청문회 결정 제목하에 설명된 것과 같이, 마지막 적법 절차 청문회 결정을 발행하기 위한 45 달력일의 일정은, 아래에 설명된 것과 같이 30달력일 이내의 해결 기간에 이루어진 조정을 위한 특정한 예외로, 해결 기간의 30달력일의 만기로 시작된다.

귀하와 교육부가 둘 다 해결 조치를 기권할 것이나 중재를 사용할 것에 동의하는 이외, 해결 회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실패는 해결 조치와 적법조치 청문회를 위한 일정회의가 열릴 때까지 지연케 할 것이다.

합당한 노력과 그같은 노력을 문서화한 이후에, 교육부가 해결 회의에서 귀하의 참여를 기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는 30 달력일의 해결 기간의 마지막에 귀하의 적법절차 이의를 청문회 임원이 기각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같은 노력의 문서는 쌍방이 동의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할 교육부의 시도의 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즉;

1. 행해지거나 시도된 전화통화의 자세한 기록과 그 통화의 결과;
2. 귀하에게 전송된 서신의 사본과 수령되어진 임의의 답변; 그리고
3. 귀하의 댁이나 고용장소에 방문한 자세한 기록 및 그 방문의 결과.

교육부가 귀하의 적법절차 불만의 통지를 수령한 뒤 15 달력일 이내에 해결 회의를 여는데 실패하거나; **또는** 해결 회의에 참여하는데 실패한다면, 귀하는 청문회 임원에게 적법 절차 청문회 일정 45 달력일을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0 달력일 해결기간 조정

귀하와 교육부가 해결 회의를 기권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45달력일 일정은 다음날 시작한다.

중재의 시작이나 해결 회의의 시작 이후에 그리고 30달력일 해결 기간의 마지막 이전에, 만약 귀하와 교육부가 서면으로 동의가 불가능하면, 적법조치 청문회를 위한 45달력일 일정은 다음날 시작한다.

귀하나 교육부가 중재 과정을 사용할 것을 동의했지만 중재과정 30달력일의 해결 기간의 마지막에 동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두 부서가 동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서면으로 계속할 것을 동의한다면 중재 과정은 계속된다. 그러나, 귀하나 교육부중 한 당사자가 이 계속 기간동안에 중재 과정에서 철회하는 경우, 적법 절차 청문회를 위한 45달력일의 일정은 다음날 시작된다.

필기 화해 동의서

분쟁의 해결이 해결 회의에서 도달했다면, 귀하와 교육부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내용은:

1. 귀하와 교육부에 속하는 권위를 가진 교육부 대변인에 의해 서명되었다; 그리고
2. 관할 구역의 임의의 주 법원(이러한 사례를 들을만한 주 법원)이나 미국의 구역 법원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동의 검토 기간

해결 회의의 결과로서 귀하와 교육부가 계약에 들어서면, 어느 한 당사자 (귀하나 교육부)는 귀하와 교육부가 동의에 서명한 시간의 3영업일 이내에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다.

적법 절차 불만의 청문회

공정한 적법절차 청문회

34 CFR §300.511

HAR §8-60-65

일반

적법절차 불만이 해소될 때마다, 분쟁에 관련된 귀하나 교육부는 **적법절차불만**과 **해결 절차**항목에 설명된 것과 같이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공정한 청문회 임원

최소한, 청문회 임원은:

1. 학생의 교육이나 관리에 관여하는 교육부의 고용인이나 임의의 주 기관 고용인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그나 그녀는 청문회의 임원으로서 종사하는 기관에 의해서만 지불 받기때문에 기관의 직원은 아니다;
2. 청문회에서 청문회 임원의 객관성에 갈등을 일으키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인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3. IDEA의 조항, IDEA에 부속되는 연방과 주 규정, 그리고 연방과 주 법원에 의한 IDEA의 법률적인 해석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4. 표준적인 법률 행사에 적절하게 청문회를 실시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작성할 지식과 능력을 소지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각 청문회 임원의 자격요건의 진술을 포함하는 청문회의 임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유지해야만 한다.

적법 절차 청문회의 주제 문제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하는 부서 (귀하나 교육부)는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적법절차불만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제를, 다른 부서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기할 수 없다.

청문회를 요청하는 시간대

귀하나 교육부는 불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관해서 귀하나 교육부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만 했던 날짜의 2년 이내에 적법절차불만에 대한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해야만 한다.

사립학교에서의 일방적인 배치에 대한 상환 주장의 한계의 조항

하와이 개정 §302A-443 의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련되는 행정적인 청문회 절차와 소환력조항에 따라, 사립학교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일방적인 배치에 대한 상환을 주장하는데 180 일 제한의 법령이 있다. 그것은, 만일 귀하가 공립학교에서 무료 적절 교육의 사용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아, 귀하의 자녀를 사립학교나 시설에 배치하고,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배치의 비용에 대한 지불이나 상환을 요청한다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상환에 대한 청문회는 사립학교나 시설에 등록된 후 180 일 이내에 요청되어야 한다. 180 일 등록 일정은 학생이 출석한 첫날에 시작한다.

시간대의 예외

이상의 시간대는 이하와 같은 이유로 만일 귀하가 적법 절차 불만을 해소할 수 없었다면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 교육부가 귀하가 불만에서 제기한 문제나 쟁점이 해결된 것을 특정하게 부정확하게 대변하였다; 또는
2. IDEA 의 B부하에 귀하에게 제공하도록 요구되었던 정보를 교육부가 귀하에게서 억제하고 있었다.

청문회 권리

34 CFR §300.512

HAR §8-60-66

일반

귀하에게는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자신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어떤 당사자도 적법 절차 청문회 (징계절차에 대한 청문회를 포함)의 다음의 권리가 있다:

1. 장애 학생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특수한 지식을 가지거나 훈련을 받은 변호사나 임의의 다른 사람을 동반하고 권고를 받는다.
2. 증거를 제기하고, 직면하며, 쌍방 검사를 하고, 증인의 출석을 요청한다.
3. 청문회 이전에 적어도 5 영업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청문회에서의 증거의 도입은 금지되어 있다.

4. 서면, 또는 귀하의 선택상으로서, 전자, 문자 그대로의 청문회의 기록을 취득한다. 그리고
5. 서면, 또는 귀하의 선택상으로서, 사실과 결정의 전자적 결과사항을 취득한다.

적법절차불만을 시작하는 당사자는 증거의 부담이나 불만 주장의 증거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정보의 추가 공개

적법 절차 청문회 이전 최소 5 영업일 이전에, 귀하와 교육부는 청문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때까지의 모든 완결시킨 평가와 기 평가에 기준한 권유안을 서로에게 공개해야한다.

청문회 임원은 이 요구사항 준수에 실패하는 임의의 당사자가 청문회에서 상대 당사자의 동의없이관련 평가나 권유안을 도입하는 것을방지할 수도 있다.

청문회에서의 부모의 권리

귀하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1. 청문회에 귀하자녀를 출석 시킨다;
2. 공중에게 청문회를 개방한다; 그리고
3. 청문회의 기록, 판명된 사실, 그리고 귀하에게 제공된 결정을 무료로 소지한다.

청문회 결정

34 CFR §300.513

HAR §8-60-67

청문회 임원의 결정

귀하 자녀가 FAPE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청문회 임원의 결정은 직접적으로 FAPE와 관련된 증거와 논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절차적 위반 ('불완전한 IEP' 팀등)을 주장하는 문제에, 청문회 임원은 귀하의 자녀가 FAPE를 받지 않았다는것을 다음의 절차상의 위반의 경우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다.

1. FAPE 의 귀하 자녀의 권리를 방해한 절차상의 위반;
2. 본 절차상의 위반으로 인해 귀하 자녀에게 FAPE 조항과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귀하의 기회를 상당하게 좌절되었다; 또는
3. 본 절차상의 위반으로 인해 귀하 자녀의 교육 혜택의 박탈을 초래했다.

위에서 설명한 어떤 조항도 청문회 임원이 교육부에게 IDEA 의 B 부 (34 CFR §§300.500 부터 300.536 까지) 에 따른 연방 규정의 절차 보호 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할것을 요구하는것을 중지한다고 해석될 수 없다.

사립학교에 학생을 배치하는것이나 사립학교에서의 지속적인 배치에 대한것에 따라, 교육부가 학생을 위한 FAPE 조항을 보장하는 책임을 행사하는것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립학교는 청문회 임원에 의해 적절한 배치라고 확정될 수 없다.

적법 절차 청문회를 위한 별도의 요청

IDEA의 B부 (34 CFR §§300.500 부터 300.536까지; HAR §§8-60-55 부터 8-60-81)따라 연방 규정의 절차 보호 항에 있는 아무것도 귀하가 이미 제소한 적법절차불만에서 별도의 적법절차불만을 제소하는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자문위원회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결과와 의사결정

교육부는 임의의 개인 식별 정보를 소거한후에는:

1.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의 결과와 결정을 제공하거나 주립 특수교육 자문위원회에 향소한다; 그리고
2. 결과와 결정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항소

결정의 최종성 ; 항소; 공정 검토

34 CFR §300.514

HAR §8-60-68

청문회 결정의 최종성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도달한 결정 (징계절차와 관련된 청문회를 포함)은 청문회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귀하나 교육부)가, **행위를 제소할 기간을 포함하는 민사 소송**의 제목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것으로 그 결정을 항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종적이다.

청문회와 검토의 일정과 편의

34 CFR §300.515

HAR §8-60-69

교육부는 해결회의를 위해 늦어도 30 달력일 만기기간후 45 달력일 이내일것을, **또는, 30 달력일 해결 기간의 조정**의 소제목 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조정된 기간의 만기후 적어도 45 달력일 이내 다음을 보장해야한다.

1. 최종 결정은 청문회에서 도달했다; 그리고
2. 결정의 사본이 당사자 각자에게 우송되었다.

청문회 임원은 한 당사자의 (귀하나 교육부)의 요청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45 달력일 기간 이후 시간의 특정적 연장을 부여할 수 있다. 각 연장은 45 달력일을 넘을수 없다. 연장의 고려를 위해서는, 청문회 임원은 다음사항을 고려해야한다:

1. 학생의 교육이 시간 연장으로 인해 지연된 그 연장시간의 부정적인 효과;
2. 연장 요청을 회피하는 요청하는 당사자의 능력;
3. 연장 요청이 탄원자인 경우, 탄원자가 청문회의 제소 이전에 적절하게 준비할 기회를 가졌는지의 여부;
4. 연장 요청 거부의 부정적인 효과

5. 비공식적 행정 소송절차를 가속시키려는 IDEA 2004 와 HAR 8-60 의 의도; 그리고
6. 연장 요청 승인이 당사들에 유리한 법률의 의도를 무효화하는지의 여부.

청문회 임원은 납득할만한 이유나 상당한 고난에 해당하는 구체적 제시물을 제공받지 않는한 청문회의 연장을 부여할 수 없다.

청문회 임원은 연장의 각 요청에 서면으로 반응해야 한다. 각 답변은 적당한 명분이 존재한다는 이유에 대한 사실의 조사결과와 결론을 포함해야 한다. 각 답변은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연장이 부여되는 경우, 청문회 임원은 청문회를 위한 새로운 날짜를 잡고 그 날짜를 서면으로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각 청문회는 귀하와 귀하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HAR 8-60 (HAR §§8-60-56 에서부터 8-60-81 까지) 의 아무것도 귀하가 이미 제소한 적법절차불만으로부터 분리된 안건에 대하여 적법절차불만을 분리하여 제소하는것을 막지 않는다.

제소할 기간을 포함한 민사 소송

34 CFR §300.516

HAR §8-60-70

일반

적법 절차 청문회 (징계 절차에 관한 청문회 포함) 에서의 결과와 의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임의의 (귀하나 교육부) 담당자는 적법 절차 청문회의 대상이었던 문제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행위는 관할지구 (이런종류의 사례를 들을 권위가 있는 주법원) 의 주 법원이나 미국의 지방법원에 분쟁의 금액에 상관없이 제기될 수 있다.

시간 제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귀하나 교육부)에게는 민사소송을 제소하는 청문회 임원의 결정일로부터 30 달력일이 있다.

추가 절차

모든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1. 행정적인 소송절차의 기록을 받는다;

2. 귀하의 요청이나 교육부의 요청에 추가 증거를 경청한다; 그리고
3. 의사 결정은 증거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하고 법원이 적법하다고 결정하는 구제를 부여한다.

적절한 상황하에서, 사법구제는 사립학교의 학비와 보상교육 서비스의 상환을 포함할 수 있다.

지구 법원의 관할권

미국의 지구법원은 분쟁금액에 관계없이 IDEA의 B 부에 따라 야기된 소송에 대한 판결의 권한이 있다.

설립 규칙

IDEA의 B부의 아무것도 미국 헌법, 1990년의 장애 미국인 법령, 1973년 재활 법안 (제 504)의 제목 V, 또는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 법률에 따라 권리, 절차, 구제 조치의 유효함을 한정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예외는 IDEA의 B 부에 따라 사용가능한 구제를 모색하는 이 법률들에 따른 민사소송의 제소 이전에, 위에 설명된 적법절차 과정은 그부서가 IDEA의 B 부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소한 경우 요청될 것과 같은 정도의 범위내에서 소진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귀하가 IDEA에 따라 사용가능한 것과 중복되는 기타의 법률에 따라서도 구제책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기타 법률에 따른 구제를 얻기 위해서는, 귀하는 법원에 직접 가기 이전에 IDEA에 따른 사용가능한 행정구제책 (즉, 적법 절차 불만, 해결회의를 포함한 해결 절차, 그리고 공정한 적법 절차 청문회 소송 절차)을 먼저 사용해야 한다.

적법 조치 불만과 청문회가 보류되는 동안 학생의 배치

34 CFR §300.518

HAR §8-60-72

장애학생을 훈육할 때의 절차의 제목에 따라 아래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결 과정 기간동안에 그리고 임의의 공정 적법 절차 청문회나 법정 소송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일단 적법 절차 불만이 다른 부서에 보내지면, 귀하와 교육부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한, 귀하의 자녀는 그/그녀의 현재 교육배치 형태에 남아 있어야 한다.

적법 절차 불만이 공립학교의 초기 입학 신청서를 포함하는 경우,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동의와 함께, 모든 소송절차의 완료때까지 정규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치되어야 한다.

적법 절차 불만이 IDEA의 파트 C에 따라 서비스를 받던 학생이 IDEA의 파트 B로 전환되는 학생을 위한 초기 서비스를 위한 신청서와 관련되어 있고, 학생이 3살이 된 이유로 파트 C 부분의 자격이 더이상 없다면, 교육부는 학생이 받아왔던 파트 C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학생이 IDEA의 B부에 따라 합법적 자격이 있다고 판명되고 귀하 자녀가 처음으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을것에 동의한다면, 소송절차의 결과가 보류되는 상태에서, 교육부는 분쟁이 없는 내에서 (귀하와 교육부가 모두 동의한)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적법 절차 청문회에서 청문회 임원이 배치의 변경이 적절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그 배치는 귀하자녀가 임의의 공정 적법 절차 청문회나 법원 소송 절차의 결정을 위해 기다리는 동안 귀하 자녀가 존속할 장소로서 현재의 교육 배치로 처리되어야한다.

변호사 수입료

34 CFR §300.517

HAR §8-60-71

일반

IDEA의 B부에 따라 제기된 임의의 조치나 소송절차는 귀하가 유리(이기면)한 경우, 법원이 그 재량으로 귀하에게 부분적 비용으로서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해결 회의및 중재의 의도는 학부모와 교육부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의 동의를 할 기회이기 때문에, 해결 회의에서와 중재 회의에서의 변호사의 참여는 어느 한 부서에게도 권한이 없다. 귀하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의 해결회의나 중재회의에 참여를 결정한다면, 귀하에게 청구된 변호사 비용은 교육부에 의해 상환되거나 보상되지 않을수도 있다.

IDEA의 B부에 따라 제기된 조치나 소송절차는, 법원이 그 재량으로, 유리한 주 교육 기관, 교육부, 귀하의 변호사에게 청구되어야할 비용의 일부로 합당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만일 그 변호사가 (a):불만이나 법원이 경솔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또는 근원이 없다고 결정한 법원 사례를 제소하거나; **또는** (b) 소송이 분명히 경솔하고, 비합리적이고, 근원이 없게 된 이후에도 소송을 계속하는것; **또는** 귀하의 적법 절차 청문회나 차후의 법원사례 요청이 예를 들어, 괴롭히거나,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조치나 소송 절차 (청문회)의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는 임의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제시되었다면 IDEA의 B부에 따라 제기된 임의의 행위나 소송절차에서, 법원은 그 재량으로, 유리한 주 교육 기관, 교육부,

귀하나 귀하의 변호사에게 청구되어야 할 비용의 일부로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수임료의 부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합당한 변호사 수임료를 부여한다:

1. 수임료는 완비된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에서 제기된 조치나 소송절차가 발생하는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한다. 어떤 보너스나 배율은 지급되는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 변호사 비용은 수여되지 않을 수 있고 관련 비용은 귀하에게 합의의 서면 제의 이후에 수행 서비스를 위해 IDEA의 B부에 따라 임의의 조치나 소송절차에 변상되지 않을 수 있다:
 - a. 제의가 소송절차가 시작되기 10달력일 이내에 언제든지, 적법 절차 청문회나 주 수준의 검토의 경우, 또는 민사 절차의 연방 규칙의 규칙 68에 의해 규정된 시간내에 이루어졌다;
 - b. 제의가 10 달력일 이내에 접수되지 않았다; 그리고
 - c. 법원이나 행정 청문회 임원이 귀하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진 구제가 합의의 제의보다 더 호의적이지 아니라는 판명을 얻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유리하고 귀하가 합의제의를 거부하는 것이 상당히 정당했다면 변호사 수임료 및 관련 비용은 귀하에게 지급될 수 있다 .
3. 회의가 행정소송 절차 또는 법원소송의 결과로 개최되지 않는 한 IEP 팀의 임의의 회의에 관련된 수수료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수수료는 또한 **중재**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중재를 위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해결 절차 제목 아래에 설명된 해결 회의는, 행정 청문회나 법원소송의 결과로 소집된 회의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이 변호사 수임료의 제공의 목적을 위한 행정 청문회나 법원 조치로도 간주되지 않는다.

법원이 이하 사항을 판명하면 법원은 IDEA의 B부에 따라 제공된 변호사 수수료의 금액을 적절하게 감소시킨다.;

1.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사가 조치 또는 소송 절차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분쟁의 최종 문제 해결을 지연했다;
2. 변호사 수임료 금액이 유사한 기술, 명성, 그리고 경험의 변호사에 의해 비슷한 서비스를 위해 공동체에서 보편적인 시간당 비용을 비합리적으로 초과하여 지급되도록 승인되었다.
3. 소비된 시간 및 완비된 법률 서비스가 소송 행위나 소송 절차의 본질을 초과하였다; 또는
4. 귀하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적법 절차 관련 불만** 제목 아래에 설명된 적법 절차 요청 통지에서의 적절한 정보를 교육부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법원이 교육부가 조치 또는 소송 절차의 최종 문제 해결을 불합리하게 지연했거나 위반이 IDEA의 B부의 절차적 보호 조항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비용을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학생을 징계하는 절차

학교 직원의 권위

34 CFR §300.530

HAR §8-60-75

사례별 결정

학교 직원은 징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에 일치하여 만들어진 배치의 변경이 학교의 학생 행동 강령을 위반한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례별로 독특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

그들은 또한 장애없는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범위내에서, 학교 직원은 연속되는 10 수업일 이내에, 그/그녀의 현재 배치로부터 적절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 다른 장소, 또는 정확으로 학생 행위의 코드를 위반하는 장애 학생을 제거할 수 있다.

일단 장애 학생이 그/그녀의 같은 학년에서 **총 10 학교일** 이내에 현재 배치에서 제거되었다면, 교육부는, 그 학년에 제거 이후 계속, 소제목 서비스하에 요청되는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학년에 10 달력일 이상의 누적 또는 계속적인 학교일 동안의 제거는 배치의 변경 (**징계 제거에 의한 배치의 변경** 제목을 참조하라)이다.

추가 권위

학생의 행위 코드를 위반한 행위가 학생의 장애 징후 (소제목 징후 결정 참조)가 아니었고 제안된 징계 제거가 그학년에서 10 일 연속되거나 누적된 일수를 초과하면, 학교 직원은, 학교가 서비스에 설명된 바와 같이 그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없는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것과 같은 같은 방식으로 장애 학생에게 이와 같은 기간동안 징계 절차를 적용할 수있다. 학생의 IEP 팀은 그같은 서비스를 위해 임시대안 교육 설정을 결정한다.

학교 직원은 HAR 19장 (§ 8-19-7)에 준수하는 10 연속 학교일에 대한 학생의 현재 교육 배치에서 장애 학생의 위기 제거 (아래 정의 참조) 지시할 수 있다. 만일 그 위기제거가, 징계 정확이나 제거의 임의의 이전 일자와 함께 10 학교 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제거가 이하와 같은 이유로 형식을 구성하는 때만 위기제거는 배치의 변경을 구성한다:

1. 학생의 행위가 제거로서의 일련의 결과 이전의 사건에서의 학생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리고
2. 이러한 각 제거의 기간, 그 학생이 제거된 시간의 총량, 그리고 두번의 제거에서의 근접성과 같은 추가적 요소들.

위기 제거는 HAR §8-19-7 (a)에 따라 추방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직후, 학생의 가능한 빨리 학교에 출석을 재개하는권리를 포함하여, § HAR §8-19-7 을 준하여이행되어야한다.

"위기 제거는" 학생의 행위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안전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제시하여 응급 상황의 학교에서 학생의 즉각적인 추방 혹은 학생이 너무 극단적으로 파괴적이기 때문에 부당한 중단이 없는 교육을 추구하는 다른 학생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의 즉각추방을 이행함을의미한다.

서비스

교육부는 동 학년에 10 학교일 이내에 대한 그/그녀의 현재 배치에서 제거된 장애없는 학생과 장애 학생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은 대안 교육 선택사항 (예를 들어, 숙제, 프로젝트, 수업 과제) 을 제공받을 수 있고 서비스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다.

학생의 현재 배치에서 10 수업일 이상 동 학년에서 제거되고 그 행위가 학생의 장애의 징후 (징후 결정 소제목 참조)가 아니거나 특수 상황하에서 제거된 (소제목 특수 상황 참조) 장애를 가진 학생은:

1. 다른 설정에서 (임시 대안 교육 설정),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 참여를 계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생의 IEP의 목표 달성을 향해 진행하도록계속해서 교육서비스를 (사용가능한 FAPE를 가진다) 받아야 한다; 그리고
2. 행위 위반에 대처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고안된 적절하고 기능적인 행동 평가, 행동 중재 서비스및 수정을 받는다.

장애 학생이 같은 학년에 10 수업일동안 현재의 배치에서 제거된 이후에, 또 현재의 제거가 10일 이내의 수업일에 계속되었고 만약 그 제거가 배치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아래 정의참조), 학교 직원은 적어도 한명 이상의 학교 선생님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에서 학생이 일반 교육 학과 과정에 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생의 IEP의 목표 달성을 향해 진행하도록가능하게 할 서비스의 필요의 범위를 결정한다.

제거가 배치의 변경 (징계 제거로 인한 배치의 변경 제목 참조) 이라면, 학생의 IEP 팀은, 다른 환경에서 (즉, 임시 대안 교육 설정일 수도 있는),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를 계속하도록 그리고 그 학생의 IEP의 목표 달성을 향해 진행하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제거가 같은 학년에 10 누적일을 초과하고 위기 제거라면, **그러면** 학교직원은 적어도 한명 이상의 학교 선생님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에서 학생들이 일반 교육 과정에 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학생의 IEP의 목표 달성을 향해 진행하도록 하는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징후 결정

위기제거를 제외하면, 학생 행위 코드의 위반에 의해 장애학생의 배치를 변경하는 임의의 결정 10 수업일 이내에, 교육부와 귀하와 기타 IEP 팀의 관련 임원들 (귀하와 교육부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을 학생의 서류에 있는 학생의 IEP, 임의의 교사 관찰, 그리고 귀하로부터의 다음을 결정할 임의의 관련 정보를 포함한 학생의 파일에 있는 관련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1.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장애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또는 직접적이고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2. 문제의 행위가 학생의 IEP를 이행하는 교육부의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교육부, 귀하, 학생의 IEP 팀의 다른 관련 임원이 이들 사항들에 적용된다고 판단할 경우 기행위는 학생의 장애의 징후로서 판정되어야만 하게 된다.

교육부, 귀하, 학생의 IEP 팀의 다른 관련 임원이, 문제의 행위가 교육부가 IEP를 이행하는데 실패한 직접적인 결과라고 결정하면, 교육부는 그 결함을 복구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행위가 학생 장애의 징후라는 것의 결정

교육부, 귀하, 그리고 IEP 팀의 다른 관련 임원이 그 행위가 학생의 장애 징후라고 결정하면, IEP 팀은 다음중 하나를 해야 한다 :

1. 교육부가 배치의 변경이 초래된 행위 이전에 기능적 행위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학생을 위한 행동적 예방계획이행을 시행한다; **또는**
2. 행동 개입 계획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면, 그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행동 개입 계획을 검토하고, 그것을 수정한다.

소제목 **특수 상황**, 아래에 설명된 것을 제외하고는, 귀하와 교육부가 행위 개입 계획의 수정의 부분으로서 배치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교육부는 귀하의 자녀를 자녀가 제거된 곳으로 반환해야 한다.

특수상황

다음의 경우 그 행위가 귀하 자녀의 장애의 징후였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 직원은 45 이내의 수업일동안 임시 대안 교육 설정 (학생의 IEP 팀에 의해 결정)으로 학생을 제거할 수 있다. 만일 귀하의 자녀가:

1. 학교에, 학교 구내에, 또는 교육부의 관할구역하의 학교 행사에 (아래 정의 참조) 무기를 가지고 오거나 소지한 형태이다;
2. 학교, 학교 구내, 또는 교육부의 관할구역하의 학교의 행사에 있는 동안, 규제 약물 (아래 정의 참조)의 판매나 판매를 조장하거나, 불법약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형태이다 (아래 정의 참조), **또는**
3. 학교, 학교 구내, 또는 교육부의 관할하에 학교의 행사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 (아래 정의 참조)를 가했다.

정의

"규제약물"은 통제 물질 법령 (21 USC 812 (C))의 섹션 202 (C)에서 별표 I, II, III, 또는 IV 하에 정의된 약물이나 기타 약품을 의미한다. "규제 약물"은 또한 329장, 하와이 개정 법령, 통일 규제 약품 법령의 I에서 V에 정의된 약물이나 약품을 포함한다.

불법 약물은 규제 약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격 보건 전문가의 감독하에 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되거나 해당 법률이나 연방법률에 따른 다른 조항에 따라 임의의 다른 권위 하에 그것이 법적으로 소유되었거나 사용되는 규제 약품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HAE 8-19는 **"불법 마약"**을 하와이 개정 법령 329장 및 712장, 4부, 하와이 개정 법령, 하에 금지된 물질로서, 소지, 배포, 섭취, 제조, 사용, 판매 또는 배달하는 금지된 물질로서 정의한다.

심각한 신체 상해는 제 18장 미국 코드의 하위 섹션 1365 (H)의 절(3) 아래에, '심각한 신체 상해'로서 주어진 의미가 있다.

무기는 제 18장 미국 코드의 섹션 930의 첫 번째 하위 조항(G)절의 단락(2)아래의 용어로 '위험한 무기'라는 단어의 주어진 의미가 있다. HAR 8-19는 전체 디자인 및 목적이 전부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입히는 도구로서 "**위험한 무기**"를 정의한다. 이러한 무기의 예는 덤크, 단검, 나비 칼, 쌍날 나이프, 곤봉, 슬러그 샷, 빌, 메탈 너클, 또는 기타 신체 부상 또는 사망을 야기시키는 무기를 포함하지만 그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통지

교육부가 학생 행위 코드의 위반의 이유로 귀하 자녀의 배치 변경인 제거를 할 결정을 한 그 날에, 교육부는 그 결정을 통보하고, 절차적 보호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징계제거로 인한 배치의 변경

34 CFR §300.536

HAR §8-60-81

다음의 경우 귀하 자녀의 현재 교육 배치에서 귀하의 장애 자녀를 제거하는 것은 **배치의 변경**이 된다. 만일:

1. 제거가 연속 10 수업일 이상이다; 또는
2. 연속 제거의 합계가 같은 학년도에 10 수업일 이상이다.

설정의 결정

34 CFR § 300.531

HAR §8-60-76

IEP 팀은 배치의 변경인 제거와 **추가 권위**와 **특별상황** 소제목하에 제거를 위한 임시 대안 교육 설정을 결정한다.

항소

34 CFR § 300.532

HAR §8-60-77

일반

다음에 귀하가 동의 하지 않는 경우, 귀하는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하여 (적법 절차 불만 소송 절차 참조할것) 적법 절차 불만을 제소할 수 있다:

1. 이러한 징계 조항하에 행해진 배치에 관한 임의의 결정, 또는

2. 소제목 **징후 결정** 아래에 발현 결정.

교육부가 자녀의 현재 배치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일으킬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면 적법 절차 청문회의 요청을 위해 적법 절차 불만 (**적법 절차 불만 소송절차** 참조)를 제소할 수 있다.

청문회 임원의 권위

공정한 청문회 임원 소제목하에 설명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청문회 임원은 적법 절차 청문회를 실시해야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청문회 임원은 이하를 할 수 있다:

1. 청문회 임원이 제거가 **학교 직원의 권한** 제목 하에 설명된 요구 사항의 위반이거나, 귀하 자녀의 행위가 귀하 자녀의 장애의 징후였다고 결정하면 귀하 자녀가 제거된 곳으로 귀하의 장애인 자녀를 반환한다, **또는**
2. 청문회 관계자가 귀하의 자녀를 현재 위치에서 관리하는 것이 귀하의 자녀나 다른 이들에게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45 이내의 수업일에 적법한 임시 대안 교육 설정에 대한 귀하의 장애자녀의 배치의 변경을 지시한다.

교육부가 귀하의 자녀를 원래 배치에 반환하는것이 귀하의 자녀나 다른 이들에게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결정하면, 이 청문회 절차는 반복될 수 있다.

귀하나 교육부가 그같은 적법 절차 청문회를 요청하려고 적법 절차 불만을 제소할 때마다, 청문회는 **적법 절차의 불만의 청문회, 적법 절차 불만 소송절차** 제목하에 설명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이의 예외로서

1. 교육부는 청문회의 요청이 제소된 날짜의 20 수업일 이내에 발생해야 하고 청문회 이후 10 수업일 이내에 결정이 되어야 하는 가속화한 적법 절차의 청문회를 위해 주선해야 한다.
2. 귀하와 교육부가 회의를 포기할것이나, 중재를 사용하는 데 동의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결 회의는 적법 절차 불만 통지를받은 7 일 이내에 발생해야 한다. 문제가 적법 절차 불만 접수 15 일 달력일 이내에 양쪽 당사자가 만족하게 해결하지 않는한 청문회는 진행될 수 있다.
3. 증거 및 평가 공개에 대한 일정은 5 영업일 이내일 수 있으며 사전 청문회 회의에서 청문회 임원이 설정해야 한다.

귀하나 교육부는 기타 적법 절차의 청문회에서 결정에서와 같은 방식 (항소제목 참조)으로 가속화된 적법 절차 청문회의 결정을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중의 배치

34 CFR §300.533

HAR §8-60-78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귀하 또는 교육부가 징계 문제에 관한 적법 절차의 불만을 제소했을 때는, 귀하의 자녀는 청문회 임원의 결정을 보류중 또는 **학교 직원의 권위** 제목하에 설명된 것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제거 기간의 만기때까지 중 빨리 발생하는 부분까지 임시 대안 교육 설정내에 있어야 (귀하와 교육부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한다.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자격이 아직 없는 학생을 위한 보호

34 CFR §300.534

HAR §8-60-79

일반

장애학생인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의 결정이 되지 않았고 학생 행동의 코드를 위반했지만 교육부가 그 징계 조치가 발생한행위 이전에, 귀하의 자녀가 장애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아래 결정된 바와 같이) 있었다면, 그러면 귀하의 자녀는 이 통지에 설명된 임의의 보호조항을 주장할 수 있다.

징계적인 문제를 위한 지식의 토대

행위가 징계 조치가 발생한 이전에 다음 경우, 교육부는 귀하 자녀가 장애인 학생이라는 지식이 있는것으로 간주할것이다:

1. 귀하의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것을, 자녀의 학교의 감독 또는 행정직원, 또는 자녀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2. 귀하는 IDEA의 B부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자격에 관련된 평가를 요청했다; **또는,**

3. 귀하 자녀의 교사 또는 다른 교육부 직원이 귀하 자녀의 학교의 감독 또는 행정직원이나 교육부서의 다른 감독 직원에게 직접 귀하 자녀가 보인 행동 패턴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예외

다음의 경우 교육부는 위의 지식을 가진것으로 간주하지 않을것이다. 만일:

1. 귀하가 자녀의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를 거부했다; 또는
2. 귀하의 자녀는 평가되었고 IDEA의 B부에 따라 장애 학생이 아닌것으로 결정되었다.

지식의 근거가없는 경우 적용되는 조건

자녀에 반하여 징계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징계 문제 및 예외에 대한 지식의 토대* 를소제목하에 위에 설명된바와 같이, 교육부가 자녀가 장애학생이라는 지식이 없다면, 유사한 행동에 관련된 장애없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요청이 귀하의 자녀가 징계 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자녀의 평가를 위해 되어진 경우, 평가는 가속화된 방법으로 실시해야한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귀하의 자녀는 교육 서비스없이 정학이나 퇴학을 포함할 수 있는 학교 권위자에 의해 결정된 교육 배치에 존속한다.

교육부에 의해 실시된 평가에서의 정보와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귀하의 자녀가 장애학생으로 결정되는 경우,교육부는 IDEA의 B부와 합치하여, 위에 설명된 징계조치를 포함하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집행및 사법 당국에 의한 추천과 조치

34 CFR §300.535

HAR §8-60-80

IDEA 의 B 부는 이하를 행하지 않는다:

1. 기관이 적절한 당국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에 의해 범해진 범죄 신고를 금지, 또는
2. 장애 학생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주 법률 집행 기관 및 사법적 권위자들이 연방 및 주 법률의 적용에 관한 책임을 행사하는것을 방지한다.

기록의 송부

교육부가 장애인 학생에 의해 범해진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교육부는:

1.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은 기관이 범죄를 신고하는 당국에 의한 고려를 위하여 전송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그리고
2.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의 사본은 FERPA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전송이 허가된다.

사립학교에 공공 비용으로 학생의 부모에 의한 일방적인 배치에 대한 요구 사항

일반

34 CFR §300.148

HAR §8-60-27

IDEA 의 B 부부는교육부가 자녀에게 FAPE 를 사용하게 했을경우, 귀하와 귀하 자녀가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 학생을 배치하는것을 선택했다면,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서 장애 자녀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교육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육부는 부모에 의해 사립 학교에 배치된 학생들과 관련해 §§300.131 에서 CFR 300.144 와 HAR §§8-60-21 부터 8-60-27 을 통해 34 CFR 이하에 B 부부 조항에 따라 그들의 필요사항이 언급된 집단에 귀하 자녀가 포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배치를 위한 상황

귀하의 자녀가 교육부의 권위하에 이전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고, 귀하가 교육부에 의한 추천이나 동의 없이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 학교에 자녀를 등록하도록 선택했다면, 법원이나 청문회 임원은, 교육부가 FAPE 가 적시에 유효하도록 귀하의 자녀에게 등록 이전에 만들지 않았고 사립의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명하면, 교육부가 그 등록의 비용을 귀하에게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문회 임원이나 법원은 만일 그 배치가 교육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에 적용할 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배치이라 할지라도, 그 배치가 적절하다고 판명할수 있다.

사립 학교가 교육부에 학생에 대한 FAPE 의 조항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 이상 사립 학교 배치에 존속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청문회 임원에 의해 적절한 배치의 결정은 되지 않는다.

청문회는 사립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후 180 일 이내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민간 배치의 비용의 상환에 대한 요청이 되어야한다. (사립 학교에서 일방적인 배치의 변상을 주장의 한계의 법률 소재목 하의 자세한 토론 참조).

보상의 한계

위의 절에 설명되어 있는 보상의 비용은 감소되거나 거부당할 수 있다:

1. 만일: (a) 귀하가 공립 학교에서 자녀의 제거 이전에 출석한 가장 최근의 IEP 회의에서, 귀하의 염려와 자녀를 사립학교에 공공의 비용으로 입학을 시키려는 귀하의 의도를 포함하여, 귀하 자녀에게 FAPE 를 제공하는 교육부서에 의해 제안된 배치를 거부했던것을 IEP 팀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는**, (b) 공립학교에서 귀하의 자녀를 제거하기 최소 10 영업일 (영업일에서 발생하는 공휴일 포함) 이전에, 그 정보를 교육부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2. 귀하자녀의 공중학교에서의 제거 이전에 교육부가 귀하에게 귀하자녀를 (그 평가의 목적의 진술이 적법하고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포함하여) 평가할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했지만 귀하는 학생에 평가가 제공될 수 있게 하지 않았다; **또는**
3. 당신의 행위가 불합리한 것을 법원이 판명함에 따라

그러나, 보상의 비용은:

1. 다음의 경우 통지에 실패하는 것에 대해 감소하거나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 만일:(a) 학교가 귀하가 통지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했다, (b) 귀하가 위에 설명된 통지를 제공하는 귀하의 책임의 통지를 받지 않았다, 또는 (c) 위의 요구 사항을 준수 하는 것은 자녀에게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 다음의 경우 법원이나 청문회 임원의 재량으로, 요구된 통지를 제공하는것의 실패에 대해 감소되거나 거절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a) 귀하가 문자 식별력이 없거나 영어로 글을 쓸 수 없다; 또는 (b) 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것이 귀하자녀에 심각한 정서적 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권리의 양도

성년의 나이에 부모 권리의 양도

34 CFR §300.520

HAR §8-60-74

장애 학생이 18 세에 도달하면, 학생이 주 법률하에 비책임적이고 의사 결정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지 않은 한 모든 권리는 부모와 일치하여 IDEA 의 B 부와 HAR860 에 따라 부모에게 해당하는 모든 권리는 학생에게로 양도된다. 권리가 성인 학생에게 전송할 때는,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IDEA 와 HAR 8-60 에서 요구된 임의의 통지제공을 계속할 것이다.

하와이 개정 법령 §§302A-491 에서 302A-498 은 세가지 교육 의사 결정 선택사항을 성인 학생에 제공한다:

(3) 교육적인 의사 결정 선택사항:

- 그/그녀를 대변하여 교육 의사 결정을 내릴 수있는 특수 교육에 대한 위임장 (제한적)을 통한 대리인 선임;
- 자신을 위한 교육 의사 결정을 내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학생을 위한 교육 대표 선임, 또는
- 자신을 위한 교육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학생을 위해 법원을 통해 확립된 후견인의 임명.

기타 지원 서비스

<p>Community Children's Council Office (아동 공동체 협의회) 4680 Kalaniana'ole Hwy., TB1A Honolulu, HI 96821 전화: (808) 305-0695 Email: familypartnerships@k12.hi.us 웹사이트: www.hawaiipublicschools.org/ParentsAndStudents/SupportForParents/Pages/CCC.aspx</p>	<p>Leadership in Disabilities & Achievement of Hawaii (하와이 학습장애협회) 245 N. Kukui St., Suite 205 Honolulu, HI 96817 전화: (808) 536-9684 웹사이트: www.ldahawaii.org E-mail: info@ldahawaii.org</p>
<p>Hawaii Disability Rights Center (하와이 장애인 권리 센터) 1132 Bishop St., Suite 2102 Honolulu, HI 96813 전화: (808) 949-2922 수신자 부담전화 (800) 882-1057 웹사이트: www.hawaiidisabilityrights.org 이메일: info@hawaiidisabilityrights.org</p>	<p>Legal Aid Society of Hawaii 924 Bethel Street Honolulu, HI 96813 전화: (808) 536-4302 수신자 부담전화: (800) 499-4302 웹사이트: www.legalaidhawaii.org</p>
<p>Hawaii Families as Allies (유류 하와이 가족) P.O. Box 1971 Aiea, HI 96701 전화: (808) 682-1511 이메일: hfaa@hfaa.net 웹사이트: www.hifamilies.org</p>	<p>Mediation Center of the Pacific 1301 Young Street 2nd floor Honolulu, HI 96814 Telephone: (808) 521-6767 Website: https://www.mediatehawaii.org E-mail: mcp@mediatehawaii.org</p>
<p>Hawaii State Bar Association Alakea Corporate Tower 1100 Alakea Street, Suite 1000 Honolulu, HI 96813 전화: (808) 537-1868 웹사이트: https://hsba.org 이메일: webinfo@hsba.org</p>	<p>Special Parent Information Network (특수 학부모 정보 네트워크) 1010 Richards Street, Room 118 Honolulu, Hawaii 96813 전화: (808) 586-8126 웹사이트: www.spinhawaii.org 이메일: spin@doh.hawaii.gov</p>

본 소책자에 설명된 조항의 이해나, 본 책자의 사본을 위한 도움을 위해서는 다음의 교육 부서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p>주 사무실: (808) 307-3600</p> <p>오하우 (OAH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Central) 622-6432 • 호놀룰루 (Honolulu) 784-6680 • 리워드(Leeward) 675-0384, -0335 • 윈워드(Windward) 784-5940 <p>카우아이 (KAUAI): (808) 274-3502</p>	<p>하와이 (HAWA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East) 974-4401 • 서 (West) 323-0015 • 북 (North) 775-8895 • 남 (South) 982-4252 <p>마우이 (MAUI): (808) 873-3520</p> <p>몰로카이/라나이 (MOLOKAI/LANAI): (808) 553-1723</p>
--	---

하와이 행정규칙, 제 8 장, 교육부, 60 장 (장애학생을 위한 무료 적절 공공 교육 조항) 및 제 34 장, 교육 권리의 보호 및 학생과 부모의 개인정보 보호는 교육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HTTP://BOE.HAWAII.GOV](http://BOE.HAWAII.GOV)